서울사회경제연구소 2023년 1월 워레토론회 발표문

Very preliminary, please do not quote.

지역재투자의 재검토

이건범 (한신대학교)

2023.1.13

-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지역재투자를 통하여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가 균형발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CRA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CRA의 제정 배경에는 미국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미국 CRA도 최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 CRA의 한계와 미국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 지역재투자 정책은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지역금융에 대한 논의는 지역간균형을 위한 금융과 지역내 격차해소를 위한 금융의 측면이 있슴
- 미국의 경우 지역내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금융이 강조된 반면, 한국의 경우 지역간 균형 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 그러나 양국가의 차별적인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한 정책(및 제도)이 도입된다고 할 때 그 효과의 유사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의 도입

- 2018년 10월 25일 금융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의 도입방안을 보고하고 확정
-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 및 복수영업구역 운영)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매년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
- 금융자원의 지역균형 배분을 유도할 것을 목표로 한 제도가 도입
- 도입필요성: 일부 지역의 경우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고,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
- <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여신비중(금융지원) - GRDP 비중(실물경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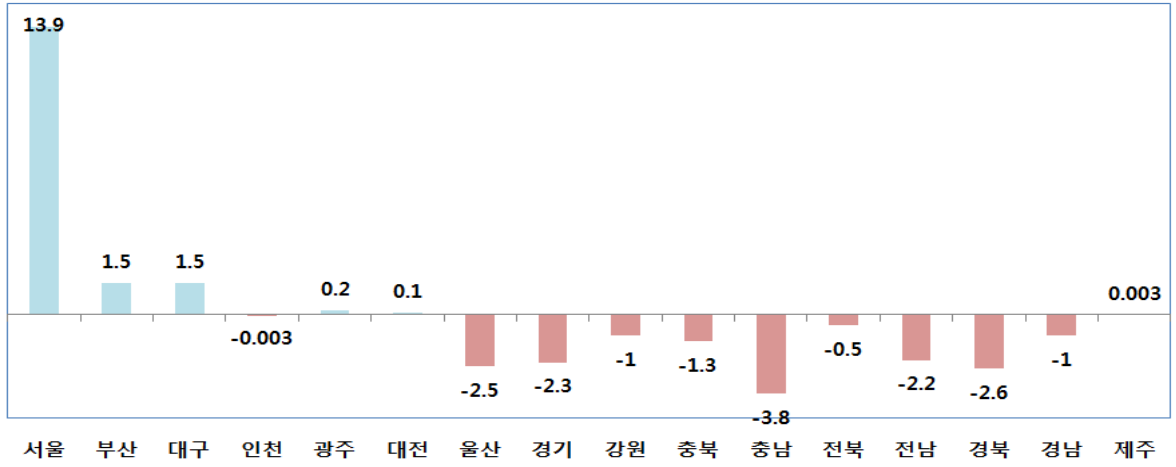

한국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의 도입(계속)

- 평가대상은 외은지점 및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한 은행과 복수 영업구역에서 영업하는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을 대상
- 시행안에서는 평가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도이며 지역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 대출 실적, 지역 내 인프라(지점·ATM) 투자수준 등을 종합하여 평가
- 5등급으로 평가한 실적은 대외 공개하며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지자체 금고은행이나 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기준에 반영
- 동방안은 동년 9월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하여 확정된 내용:
- - 지방(비수도권)의 실물경제 비중, 사업체 수, 중소기업 사업체 수가 50% 이상이고 종사자 수도 50%에 육박하나 지방금융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이 필요
- - 인구당 점포수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는 점을 지적
- - 따라서 특정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지역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 등의 대출 등 금융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고 있는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성을 주장

2022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 2022년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에서는 시중은행의 경우 종합적으로 '농협·기업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각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수는 농협은행(9개), 기업은행(5개), 하나은행(4개), 국민은행(3개), 신한은행(1개) 이었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종합적으로 '광주·전북·경남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
- 저축은행의 경우 종합적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저축은행은 없으며, 'OK·BNK·애큐온·예가람·JT친애저축은행'이 우수 등급을 획득
- 평가지역(비수도권)에 대한 여신비중은 35.3%로 전년(35.7%) 대비 소폭 감소
- 평가지역의 수신액 대비 여신액 비율(예대율)은 131.3%로 전년(127.4%) 대비 상승(수도권(91.2%)에 비해 높은 수준)
- 평가지역의 총생산비중(47.5%)과 여신비중(35.3%)의 차이는 △12.2%p이며, '20년과 동일한 수준
-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서는 2021년 기준 은행의 평가지역 기업대출액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은 95.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 서민대출에 있어서 2021년 기준 은행의 평가지역 가계대출액 대비 서민대출액 비중(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등을 대상으로 은행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새희망홀씨 취급액 기준)은 0.50% 수준으로 전년(0.60%) 대비 0.1%p 하락하였으나, 수도권(0.30%)에 비해서는 높음
- 인프라 측면에서 은행의 평가지역에 대한 인구수(백만명) 대비 점포 수는 106.6개로 수도권(126.5개)에 비해 적은 수준이고 감소세가 수도권 감소세에 비해 완만

2022년 은행과 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구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최종 등급
신한	양호	우수	우수	양호	양호	최우수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다소 미흡	다소 미흡	다소 미흡	우수	양호
우리	우수	우수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다소 미흡	다소 미흡	양호	우수	양호
SC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미흡	다소 미흡	다소 미흡	다소 미흡	다소 미흡	다소 미흡	다소 미흡	우수	미흡
하나	우수	최우수	우수	최우수	최우수	양호	우수	우수	양호	양호	양호	다소 미흡	최우수	우수
씨티	다소 미흡	양호	양호	양호	다소 미흡	-	다소 미흡	-	-	-	-	다소 미흡	양호	미흡
국민	최우수	최우수	우수	최우수	우수	우수	양호	양호	우수	양호	양호	양호	우수	우수
기업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농협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우수	양호	최우수	우수	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수협	양호	양호	양호	우수	미흡	양호	다소 미흡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미흡	양호	양호	다소 미흡
대구	우수	최우수	-	다소 미흡	양호	-	-	-	-	-	최우수	다소 미흡	-	우수
부산	최우수	양호	-	다소 미흡	양호	-	-	-	-	-	-	우수	-	우수
광주	-	-	최우수	-	-	-	-	-	-	최우수	-	-	-	최우수
제주	미흡	-	-	-	-	-	-	-	-	-	-	-	최우수	우수
전북	-	-	-	우수	-	-	-	다소 미흡	최우수	-	-	-	-	최우수
경남	최우수	양호	-	-	최우수	-	-	-	-	-	다소 미흡	최우수	-	최우수

※ '-' 지역은 점포가 없어 평가시 제외

구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최종 등급
애큐온	우수	-	-	-	우수	-	-	-	-	-	-	다소 미흡	-	우수
SBI	-	우수	우수	우수	-	우수	다소 미흡	다소 미흡	다소 미흡	다소 미흡	다소 미흡	-	우수	양호
페퍼	-	-	우수	-	-	-	-	-	다소 미흡	다소 미흡	-	-	우수	양호
한국 투자	-	-	다소 미흡	-	-	-	-	-	다소 미흡	미흡	-	-	다소 미흡	다소 미흡
예가람	최우수	-	-	-	다소 미흡	-	-	-	-	-	-	다소 미흡	-	우수
대신	미흡	다소 미흡	-	-	미흡	다소 미흡	-	-	-	-	미흡	미흡	-	미흡
BNK	다소 미흡	-	-	-	최우수	-	-	-	-	-	-	다소 미흡	-	우수
JT친애	-	-	최우수	미흡	-	-	다소 미흡	우수	우수	우수	-	-	우수	우수
웰컴	미흡	-	-	미흡	다소 미흡	-	다소 미흡	다소 미흡	-	-	-	다소 미흡	-	다소 미흡
오케이	-	-	우수	최우수	-	-	다소 미흡	다소 미흡	우수	다소 미흡	-	-	우수	우수
OSB	-	-	다소 미흡	-	-	-	-	-	미흡	미흡	-	-	다소 미흡	미흡
JT	-	-	우수	-	-	-	-	-	우수	미흡	-	-	우수	양호

평가항목 및 등급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은행	저축은행
1. 지역자금 역외유출 (35/50)	①지역별 예대율 ‣ 전년 대비 개선수준 (가점)	15 (+1)	25 (+1)
	②지역경제 대비 여신괴리율 ‣ 지역경제 대비 기업여신괴리율	15 (7.5)	20 (-)
	③지역 여신 증가율	5	5
2. 중소기업 지원(25/20)	①지역별 중기대출/총 여신 ‣ 중기대출 차주수 증가율 (가점) ‣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실적 (가점)	15 (+0.4) (+1.0)	10 (+0.5) (+0.2)
	②지역별 중기 경제기여도 대비 중기대출 괴리율	5	5
	③지역 중기대출 증가율	5	5
3. 서민대출 지원(15/20)	①지역별 서민대출/가계대출 ‣ 서민대출 차주수 증가율 (가점)	10 (+0.4)	15 (+0.6)
	②서민대출 증가율	5	5
4. 인프라 투자 (15)	①인구 천명당 점포 수 ‣ 점포 신설 (가점) ‣ 점포 폐쇄 (감점) ‣ 점포 폐쇄 사전통지 등 미실시 (감점) ‣ 우체국 창구 제휴 (가점)	7.5 (+0.2) (△0.2~△1.0) (△1.0) (+1.0)	
	②인구 천명당 자동화기기 수 ‣ 자동화기기 신설 (가점) ‣ 우체국 자동화기기 제휴 (가점)	7.5 (+0.1) (+1.0)	
5. 지역금융 지원전략(10)	①해당 지역 경제기여도	2	4.5
	②지역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금융환경 기여도	2.5	-
	③지역 서민 금융환경 기여도	2.5	3.5
	④지역 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2.5	1.5
	⑤기타 지역금융 지원전략	0.5	0.5

평가점수	90점이상	85~90점	80~85점	75~80점	75점 미만
평가등급(점수)	최우수(5점)	우수(4점)	양호(3점)	다소미흡(2점)	미흡(1점)

미국의 CRA 제도

- 1970년대 미국에서는 은행 및 저축금융기관들이 인종적. 경제적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대출을 제한하여 여신서비스가 고소득계층에 편향 제공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
- 당시 금융회사들은 각 지역의 소득수준 등을 바탕으로 여신심사를 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인종이나 종족 또는 경제적 특징상의 이유로 여신제공에 부적절한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을 실제로 붉은 선을 그어 구분하는 레드라이닝(red-lining) 이들 지역 주민에게는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
- 1977년 위스콘신주 상원의원 프락시마이어(Proximire: ‘nemesis of banking industry,’ Kuttener(2022))가「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을 발의
- CRA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여신 등 금융서비스의 공정한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며, 연방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CRA관련 업무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점설치 및 영업확장 등 인허가업무에 반영
- CRA에 대한 1차 제도변경은 1989년: 금융회사의 CRA등급 및 관련 검사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 각 감독당국은 연방금융기관검사협의회(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 FFIEC)14)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된 CRA제도의 시행방법을 공표하였고, 기존의 계량화된 등급부여방식을 서술적 방식으로 변경
- 1996년 변경: 금융회사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대폭 수정, 기존 제도가 지역사회에 대한 여신실적 중심의 평가지표를 사용한 반면, 새로운 제도는 여신실적 외에 투자실적, 서비스실적 등 여타 지표를 도입하여 평가지표를 다양화되었고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여신실적이 부진한 은행이더라도 여타 평가지표를 통해 CRA등급을 올릴 수 있어 CRA의 원래 의미가 퇴색하였다는 비판
- 1998년 금융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 입법에서 은행에 유리한 제도의 대폭 완화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검사횟수의 축소 및 지역사회 단체와 금융회사 간의 CRA제도 관련 합의금을 공시하는 선에서 동 제도를 개정

미국의 CRA 제도(계속)

- CRA의 대상은 예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금 금융회사들
- 금융회사들은 지역사회의 소기업 및 소농,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고, 1년간의 실적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1일까지 이를 해당 감독기관에 제출
- 평가는 금융회사의 대출, 투자,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등 3항목
- 여신부문 검사(lending test)에서 각 감독기관은 개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소규모사업대출, 지역사회개발여신 등의 규모와 횟수 등 금융회사의 지역사회에 대한 여신 서비스 제공 실적을 평가
- 투자부문 검사(investment test)에서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투자(지역사회내 여신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투자로 한정) 실적을 점검
- 서비스부문 검사(service test)에서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매금융서비스 실적을 점검
- 평가결과는 탁월(outstanding), 양호(satisfactory), 개선필요(needs to improve) 및 실질적 비준수(substantial noncompliance) 등 4단계 등급
- 평가결과는 은행 설립이나 합병, 지점 설치 및 이전 등 감독기관의 인허가시 중요한 심사 요건으로 활용
-

최근 미국의 CRA 개정 동향

- 2022년 5월 FRB(Federal Reserve Board, 이하 FRB), OCC(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이하 OCC),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등 연방금융감독기관들은 공동으로 지역사회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이하 CRA) 개정안을 발표
- 개정안은 인터넷 등 영업 채널 변화에 따라 기존 평가방식의 유효성 저하, 지역 · 인종 · 소득별 신용 접근 불평등 지속 내지 심화 등으로 CRA의 강화 및 현대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개정 움직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점 · 지점 · ATM 등 물리적 시설이 있는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평가대상 지역을 정하되, 일부 대형은행은 지점 기반 평가 방식을 일부 조정하여 비대면 대출 및 예금 기반의 추가적인 평가지역을 허용하고, 인터넷은행의 경우 전국을 평가대상 지역으로 고려
- 소매대출(retail lending)의 경우 차주의 지리적 위치 및 소득계층의 매트릭스를 고려하고, 서비스 및 상품 구성 등 소매서비스(retail services and products) 부분은 은행규모별로 평가방식을 차별화하며, 지역사회 개발지원(community development financing)은 대출 · 투자 자금 지원 관련 정량적 지표를, 서비스(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 부분은 정성적 평가방법을 사용
- 평가항목의 명확성,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등급별 기준을 공개하고, 은행 자산규모, 소매영업 유무,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적용하는 평가항목을 차별화
- 평가지역별로 산정된 등급을 예금과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최종 종합 등급을 산정한다. 저소득 지역에 초점을 맞춘 CRA 적격 활동을 명확히 정하고 포괄범위를 확대한다. 자료수집과 보고 의무를 최소화하고 특히 비도시지역 소형은행의 부담을 완화

미국의 지역금융회사CDFI 관련 정책

-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 최초로 CDFI의 기능과 역할이 법률에 의해 제도화
- 목적 : The purpose of this subtitle is to create a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 to promote economic revitaliz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investment in and assistance to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enhancing the liquidity of c 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 CDFI 요건: 1. 지역 또는 커뮤니티의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조직, 2. 투자대상 지역 또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조직, 3. 지역개발 사업에 더해 주식 투자 또는 융자를 시행하는 조직, 4. 넷째, 투자대상 지역의 주민 또는 여러 주체들에 대해 설명 책임을 지속적으로 다하는 조직, 5. 민간조직

- 4가지 CDFI 종류

1. 커뮤니티 개발 은행(Community Development Bank): 영리기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커뮤니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이사를 모집하여 매우 강한 지역 대표성 또는 지역 착근성, 금융당국에 의한 감독을 받고 있으며, 금융감독기관은 이 기관에 대해 건전한 은행경영을 강제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므로 여타 CDFI 기관의 업태에 비해 융자의 기준 및 리스크 관리가 엄격, 커뮤니티 개발은행은 낮은 리스크로 대형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출수요자를 대상으로 투자 또는 융자를 하는 경향

2. 커뮤니티 개발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금융소외자 즉 신용 및 담보 상의 문제로 금융기관에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비영리조직, 저소득층 또는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서비스에 특화하여 전국 크레딧 유니온 관리청(NCUA)의 영업 허가를 얻게 되면, 외부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음, 주로, 생활비, 대학 입학금, 자동차 및 주택의 수리 등과 같은 비일상적인 지출 비용과 취업활동, 직업훈련, 창업 등을 위한 비용 등에 초점을 맞춘 대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며, 개인 수요자에 대한 소액 융자가 일반적

3. 커뮤니티 개발 론펀드(Loan Fund for Community Development): 정부, 재단, 은행,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종교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출자, 기부금, 저리융자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커뮤니티의 개발사업에 융자하는 조직,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커뮤니티 개발 론펀드의 98%는 비영리조직으로 이사회는 강한 지역 대표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 융자 대상 분야는 주로 영세기업, 소기업, 사회취약계층 임대주택(Affordable Housing), 커뮤니티 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론펀드는 대출의 융자 대상을 위의 네 가지 중에서 특화하여 설정해온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하나의 론펀드가 복수의 융자 대상을 상대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

4. 커뮤니티 개발 벤처캐피털 펀드(Venture Capital for Community Development): 커뮤니티 개발 벤처캐피털 펀드는 자본투자의 형태로 특히 창업직후의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조직, 벤처캐피털 펀드는 영리기업의 형태를 취하는 조직도 있거니와 비영리조직의 형태를 취하는 조직도 있음, 지역의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고용확대를 목적으로 설정하여 일반적인 벤처 캐피털이 투자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입지조건의 기업에 대해 주로 투자

CDFI 관련 정책

•재정지원(Financial Assistance Awards; FA)과 경영지원(Technical Assistance Awards; TA)으로 구분

• 재정지원은 연방정부(CDFI Fund)가 인증한 CDFI 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지원 정책으로 이 자금은 각 CDFI가 수행하는 융자의 기초 자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인증 CDFI의 수요에 의거하여 투자, 대부, 예금, 보조금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은 인증 CDFI는 동일한 액수 및 형태의 민간 자금을 준비하여 빈곤 지역의 금융상품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CDFI는 1건 당 200만 불까지 재정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이 재정지원 정책은 인증 CDFI가 빈곤 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 제공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간자금이 CDFI에 대거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재정지원은 CDFI 펀드의 보조금 중에서는 최대 규모이다

•경영지원은 이미 인증된 CDFI 및 CDFI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10만 불까지 자금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CDFI의 경영 역량을 형성, 강화하기 위한 공적 보조금 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CDFI 단체의 새로운 기자재 구입, 컨설턴트 수수료, 직원에 대한 교육(인재육성), 시장조사, 그리고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매우 폭넓은 경영활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 은행의 CDFI에 대한 협조는 CRA 평가항목에 포함됨

한국 재투자평가제도의 문제점(이상제 2022)

1. 우리나라 현행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을 고려 i) 평가대상 및 평가지역확대, ii) 금융회사 규모 및 영업모델 특성을 감안한 평가방법 차별화, iii) 지역별 평가등급의 합산 방법 조정 등을 통해 평가제도의 타당성 및 규제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인터넷전문은행은 전국을 평가지역으로 평가하거나, 외은지점이나 중소형 저축은행은 특성에 맞춰 평가항목을 차별화함으로써, 지역재투자 활동 평가에 보다 많은 예금수취 금융회사를 포괄하면서도 자료수집 및 보고 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음.

• 전체 평가에서 20%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자금 역외유출’ 평가부문은 기업금융과 소매금융 등 차주나 상품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지역별 비교기준(market benchmark)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경제활동 통계 수집 기준과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 대출의 지역 분류 관행의 차이로 현행 평가항목인 지역별 예대율, 지역여신 증가율, 지역경제 대비 기업여신 괴리율 지표 등은 평가대상 금융회사들의 지역재투자 활동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음.

• 인구 천명당 점포 및 자동화기기 수 등 인프라 투자 평가부문은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영업채널의 증가 추세에 맞춰 추가적인 평가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금융 지원 전략 평가부문은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적격활동을 명확히 하고 포괄 범위도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신규 활동 추가협의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지역별 등급에서 종합등급을 산출할 때 단순평균보다 예금 또는 대출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하고, 종합등급 최우수(1등급)는 최소등급 원칙을 적용하여 평가부문 중 하나라도 4등급이하가 있을 경우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미의 지역재투자의 제도적 차이

1. 1970년대 미국의 은행권과 2010년대 후반 한국의 은행권의 비교 : 숫자, 영업권역

단점은행 제도와 지점은행 제도, 미국 community bank의 relationship banking vs. transaction banking

2. 한미의 은행 및 점포수

YEAR	BANKS	BRANCHES
1970	13,511	21,839
1975	14,384	30,205
1977	14,411	33,108
1980	14,434	38,738
1985	14,205	44,523
1990	12,228	54,270
1995	9,901	59,372
2000	8,200	67,574
2005	7,467	76,108
2010	6,532	84,895
2015	5,349	81,963

구 분		'15말	'16말	'17말	'18말	'19말	'20말
시중	신한	899	871	865	876	876	**859**
	우리	956	894	876	877	874	**821**
	SC	254	254	239	227	216	**200**
	하나	934	862	775	753	724	**651**
	씨티	133	133	44	44	43	**43**
	국민	1,138	1,130	1,062	1,057	1,051	**972**
지방	대구	254	258	252	248	244	**235**
	부산	269	265	262	252	251	**232**
	광주	134	140	141	142	145	**146**
	제주	37	37	37	36	35	**33**
	전북	101	100	95	94	99	**97**
	경남	169	167	165	161	159	**146**
특수	산업	82	77	77	74	74	**69**
	기업	618	617	609	643	635	**635**
	수출입	14	14	14	14	14	**14**
	농협	1,169	1,160	1,150	1,135	1,135	**1,121**
	수협	120	122	126	133	134	**131**
전체		7,281	7,101	6,789	6,766	6,709	6,405

Assessment area의 비교

- 미국은 경제적의미를 고려하고 redling에 대한 우려로 평가지역에 대한 엄밀한 규정을 실행하나 한국은 행정구역 사용

- 은행의 CRA 평가지역(assessment area)은 만약 특정 MSA(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384개), MD(metropolitan Division), county, city, town, political subdivision에서 majority minority census tracts를 제외하는 ‘doughnut’ 또는 ‘horseshoe’ 패턴이면 redlining risk에 해당함

 - 2016년 BancorpSouth Bank에 대한 사례

은행은 자신의 본래 assessment area에 존재하는 128개의 majority minority tract에서 123개를 제외하여 당국의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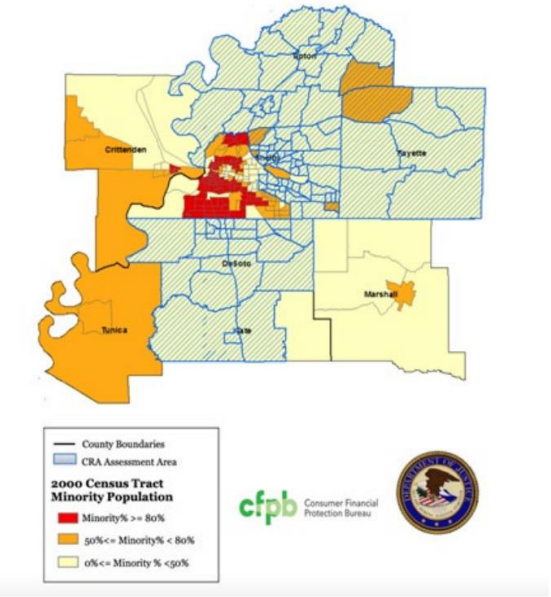

결론

1. 미국 CRA 정책은 인종문제, 소득격차문제, 지역별 거주 문제가 금융배제, 특히 여신배제 문제로 나타난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관련 정책수단을 서민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입법의 정보 공개 확대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로 지역적 금융소외의 문제에 일정 부분 개입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는 존재하지 않음
2. CRA가 문제제기한 지역예금의 지역내 여신으로의 활용문제를 지역균형발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 금융규모와 실물경제규모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닥도 하더라도 정책시작 시점의 상태(상대적 경제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최대의 정책목표 실현이고 만약 초기 환경이 대폭적인 격차의 상황이라면 격차는 유지됨

✓ 만약 실물성장이 주로 금융외적인 요인에 의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지역간 격차는 오히려 더 확대가능

✓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금융적 측면을 시행한다면 열위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ex. 지방은행 부재지역 개선 등)

3. 금융접근성에 대한 차별 시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 중저소득층에 대한 금융보조를 위한 정책수단 필요 (금융회사의 신용등급활용 문제, 만약 신용등급이 소득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소득에 따른 금융접근성 제약의 문제가 있슴)

4. 미국은 은행에 대해서는 CRA, 지역특화금융회사에 대해서는 CDFI정책을 통해서 지역금융(특히 지역의 중저소득층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정책서민금융을 통해서 대응